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914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3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었음.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년도(2022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2,996백만원에서 3,540백만원으로 544백만원 증액하였고, '기타수입' 금액이 6백만원 순증하였음.

- 예치금 회수 : 2022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를 통한 예치금 감액(△200백만원),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미집행(600백만원), 일반사업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106백만원), 이자수입 증가분(38백만원)
* '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사업비 신규편성

- 기타수입 :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 집행잔액(6백만원)

나. 또한,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 사업비 신규 편성 및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예상 불용액 감액 등으로 '비용자성사업비' 89백만원 감액하였음.

- 비용자성 사업비 :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 사업비 신규 편성(41백만원),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감액(△130백만원)

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1,083백만원에서 1,722백만원으로 639백만원 증가하여 59% 변경되었음.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장/관/항/목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합 계	4,056	4,606	550	13.5
세외수입	60	66	6	10
경상적세외수입	60	60	-	-
이자수입	60	60	-	-
공공예금이자수입	60	60	-	-
임시적세외수입	0	6	6	순증
기타수입	0	6	6	순증
그외수입	0	6	6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96	4,540	544	13.6
보전수입등	2,996	3,540	544	18.1
예치금회수	2,996	3,540	544	18.1
예치금회수	2,996	3,540	544	18.1
내부거래	1,000	1,000	-	-
전입금	1,000	1,000	-	-
기타회계전입금	1,000	1,000	-	-

-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 (B)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 (C)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차 (D)	증 감 (E=D-A)	증 감 률 (F=E/A)
합 계	4,056	4,056	4,056	4,606	550	13.5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2,970	2,970	3,011	2,881	△89	△3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2,970	2,970	3,011	2,881	△89	△3
서울-타 시도간 스토리여 행상품 개발운영	150	150	150	150	-	-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360	360	360	360	-	-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	1,000	1,000	1,000	-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160	160	160	30	△130	△81.2
사무관리비 (201-01)	90	90	90	25	△65	△72.2
행사운영비 (201-03)	70	70	70	5	△65	△92.8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250	250	250	250	-	-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	65	65	65	65	-	-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	485	485	485	485	-	-
동해·울진 산불지 복구지원	500	500	500	500	-	-
시설비 (401-01)	500	497	497	497	△3	△0.6
시설부대비 (401-03)	0	3	3	3	3	순증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	0	0	41	41	41	순증
사무관리비 (201-01)	0	0	5	5	5	순증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0	0	36	36	36	순증
재무활동	1,083	1,083	1,042	1,722	639	59
보전지출	1,083	1,083	1,042	1,722	639	59
여유자금 예치	1,083	1,083	1,042	1,722	639	59
행정운영경비	3	3	3	3	-	-

Ⅲ.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5억 4,400만원)와 세외수입(600만원)을 변경하고, 각각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에 반영하고 다른 정책사업인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을 일부 감액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¹⁾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행정국 대외협력과)**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59.0%, 6억 3,9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 됨
 - 지출계획을 변경요청한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의 경우 당초 지출계획보다 △3.0%, △8,900만원을 감액변경 계획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표 3-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당 초 (A)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출합계	4,056	4,606	550	13.5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2,970	2,881	△89	△2.9
재무활동 (행정국 대외협력과)	1,083	1,722	639	59.0
보전지출 (대외협력계정 국내협력계정)	1,083	1,722	639	59.0
여유자금예치 (국내협력계정)	1,083	1,722	639	59.0
행정운영경비 (행정국 대외협력과)	3	3	-	-

※ 자료근거 :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지출계획,
②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23. 5.30) 재구성

○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수·지 운용계획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기금의 용도)

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